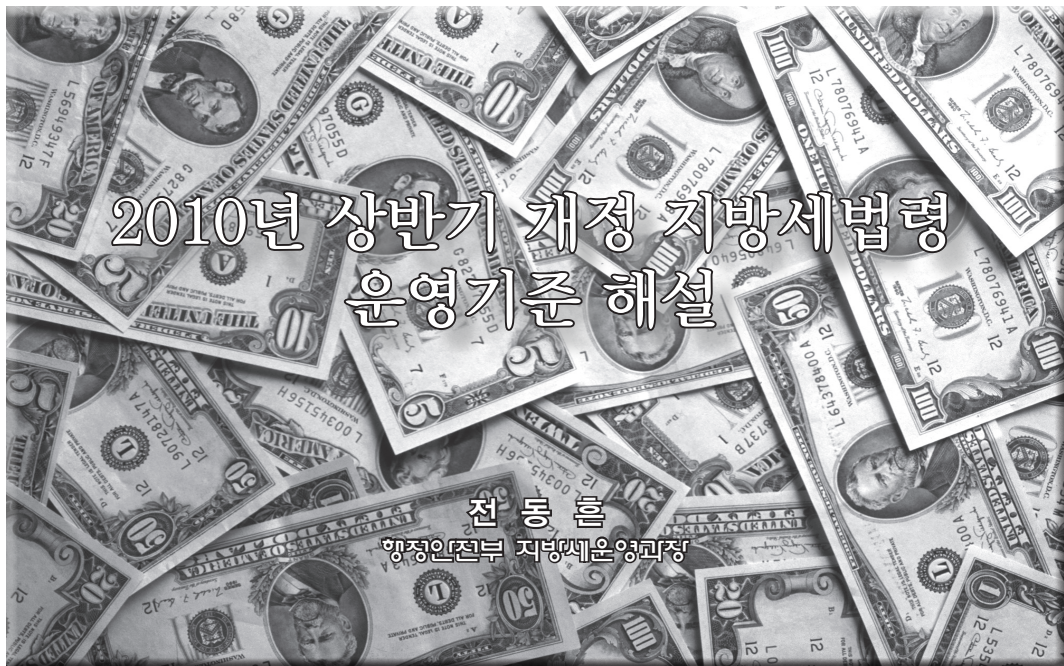




I. 의의

금년 상반기중에 지방세법 개정의 주요한 특징은 친환경정책과 다자녀 양육자에 대하여 지방세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동안 지방세정운영상에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을 개선보완한 점이다.

총칙편에서는 징수교부금은 시도세를 시군구에서 징수함에 따른 행정비용보상성격으로 징수금액 외에 징수건수 등도 반영할 필요성이 있으나 징수금액만을 기준으로 지급함에 따라 세수불균형 문제가 제기되어 도세 징수교부금의 교부기준을 징수금액 및 징수건수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본질적인 사안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이를 법률상의 권익 보호장치로 마련하였다.

등록세의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지분이전 등기 시 공유물 분할의 경우와 같이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등록세율을 조정하며, 대도시내 중과세에 대한 추정근거를 명확히 하여 추정기준이나 방법을 시행령 등에 명시하였다. 또한 면허세 납부 관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면허세부과·징수를 위한 면허부여기관의 통보 및 협조의무를 법률에 규정하였다.

2009. 2월 주택가격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계속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제도 도입, 재산세 세율인하 등 재산세제 개편을 추진한 반면에 동일 과세대상에 부과하는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에 대한 세율인하가 병행되지 않아 재산세 대비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 발생하여 2009년에는 자치단체의 조례개정을 통한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세율인하로 문제점을 해소하였으나, 국민세부담 완화, 법적 안정성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하여 재산세의 세율인하 폭에 상당하도록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조정하여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II. 분야별 운영상 적용기준

□ 체납 지방세 충당순서의 변경(법 제33조)

종 전	개 정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중의 우선순위) ①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체납처분비 2. 가산금 3. 지방세 ②제1항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도세는 본절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중의 우선순위) ①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체납처분비 2. 지방세 3. 가산금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도세는 본절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적용례]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가 아닌 가산금(통상 본세의 3%)부터

충당함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세를 먼저 충당하지 아니함에 따라 체납액이 누적 발생하여 종전의 체납처분비, 가산금, 지방세의 순서로 징수하던 것을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로 충당토록 변경하여 체납자의 체납세 부담을 감소토록 하기 위함이다.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체납액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 도세징수비용의 교부기준 조정(법 제53조, 영 제41조)

종 전	개 정
② 제1항의 도세징수의 비용은 시·군의 부담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u>교부율</u> 에 따라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리비로 시·군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도세와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당해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도세징수의 비용은 시·군의 부담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u>교부율과 교부기준</u> 에 따라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리비로 시·군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도세와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당해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적용례]

- 징수교부금은 시도세 징수업무처리에 대한 보상비로서 시도세 징수금의 3%를 일률적으로 지급함에 따라 시군구간 세수불균형이 심화되어 징수교부금의 교부기준을 징수금액뿐만 아니라 징수건수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시도 조례로 교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 징수교부금의 범위는 징수액의 3%범위 내에서 징수액과 징수건수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으며 레저세는 징수액 기준으로 하되 병기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시도세의 징수금의 일정비율(3%)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납입한 징수금액에 대한 각 시·군 및 자치구별 분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하기 때문에 교부율 3%범위이내에서 징수금액이나 징수건수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교부할 수 있는 것이다.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0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 명문화(법 제70조, 영 제52조3 제52조의4)

종 전	개 정
제70조(과세전적부심사) ①납세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70조(과세전적부심사) ①납세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u>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의 청구를 할 수 있다.</u> ② <u>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③ <u>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u> 1. <u>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하는 결정. 다만, 청구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채택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u> 2. <u>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u> 3. <u>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u> ④<u>과세전적부심사의청구절차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70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u>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② <u>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③ <u>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적용례]

- 국민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그 근거가 법적인 근거하에서 보장받아야 함에도 절차적 규정인 시행규칙에 적용한 것은 국민 권익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시행규칙에 있는 과세전적부심 관련규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그에 따라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상의 잔여조항(심사청구 절차·위원장 등)을 개정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할 것이다.

□ 구분 소유권분할시 취득세 비과세 적용(법 제110조)

종 전	개 정
4. 法人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法人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課稅物件이 합병후에 제112조의2의 規定에 의한 課稅物件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4. 法人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法人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課稅物件이 합병후에 제112조의2의 規定에 의한 課稅物件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로 인한 취득(다만, 등기 부동산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적용례]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두9331, 2008. 8. 21)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공유물 분할 등기를 하더라도 비과세 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에 따라 형식이 공유물 분할 등기와 유사함으로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등록세의 경우 공유물 분할등기에 해당하는 세율 (0.3%)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 판례 || 명의신탁을 통한 공유물분할시 비과세 적용 판단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고, 또 토지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취득하고 편의상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등기부상의 공유자가 공유자들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취득세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같은 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두207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다가 분할 후 각 토지의 소유자들을 상

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그들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 내지 화해권고결정 등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이전받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두9331, 2008. 8. 21)

따라서 구분소유적 공유물의 경우 여러사람이 1필지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각자가 위치와 면적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특정부분을 매수하고 등기의 편의상 분할하여 등기를 하지 않고 공유지분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분	내 용		세 율	
			취득세	등록세
일반적 공유물	- 구분소유 약정이 없음 - 공유자가 공유물 전체 사용수익 - 공유물분할 로 공유관계 해지		비과 세	0.3%
구분소유 공유물	공유물 분할 형식 (당사자간 합의시)	- 구분소유 약정이 있음 - 공유자가 공유물 특정부분 사용 · 수익	비과 세	0.3%
	명의신탁 해지 형식 (판결, 화해권고 등)		2%	1.5%

○ 예를 들면 ○○구 △△지구 구획정리사업은 1939.1월 환지계획자체가 구분소유방식으로 추진 되었으며, 1966.9월 구획정리사업 완료시 국가 외 51인에게 구분소유 공유지로 불하된 경우에는 구분소유 지분정리시 취득세는 비과세, 등록세는 0.3%만 적용하게 됨으로 종전에는 국가를 제외한 공유자 51인 전부가 높은 세율인 취득세 2%, 등록세 1.5% 적용 대상되었으나 개정이후 최초로 지분이전등기하는 부동산부터 취득세는 비과세, 등록세는 공유물분할 등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구분 소유권분할시 등록세 세율 적용(법 제131조)

종 전	개 정
〈신설〉	5의2.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다만,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분할 또는 지분이전으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

□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추정규정 신설(법 제138조)

종 전	개 정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의 법인등기 및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해당 세율로 한다.

[적용례]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세 적용제외대상 업종과 부동산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

-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는 제외) 안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

종 전	개 정
〈신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기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직접 사용하여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 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등기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등기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부동산 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라 등기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부동산 등기일 이후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나. 부동산 등기일 이후 2년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적용례]

-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세 적용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등록세 일반과세후 중과세 추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추정토록 한 것이다.
- 중과세 추정 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등기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등기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부동산 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 부동산 등기일 이후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 부동산 등기일 이후 2년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 (적용시기 및 적용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 등기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 등기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세 적용 업종의 조정(영 제101조 제1항)

종 전	개 정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법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업종”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법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업종”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세 적용 업종의 조정(영 제101조제1항 제8호)

종 전	개 정
8.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의한 가축시장. <u>이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대해 허용되는 매장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u>	8.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의한 가축시장. (후단삭제)

[적용례]

○대도시내 중과세 대상 제외업종중 임대차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 추정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세 적용 업종의 조정(영 제101조제1항 제9호)

종 전	개 정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창고업

□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세 적용 업종의 조정(영 제101조제1항 제21호)

종 전	개 정
21.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후 1월 이내에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2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을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후 1월 이내에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세 적용 업종의 조정(영 제101조제2항)

종 전	개 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② 법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이란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의 건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 이라 함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이하는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③ 법 제13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이란 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말하고, 법 제138조제2항제2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적용례]

- 대도시내 중과제외 대상업종에 대하여 1년 이내 중과세 제외업종에 사용하여야 하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3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으로 한다.

□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세 적용 업종의 조정(영 제101조제4항)

종 전	개 정
〈신설〉	④ 법 제1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의 전기통신사업(「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같은 법 제34조의3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항제8호의 유통산업,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유통자회사 및 가축시장(「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적용례]

○대도시내 중과세 대상 제외업종중 임대차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 추정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같은 법 제34조의3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과 유통산업,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유통자회사 및 가축시장(「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차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하는 부분에 한정)에 대하여는 비록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를 하더라도 중과세 추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제외 추정(영 제102조제8항)

종 전	개 정
⑧법인이 제101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업종(이하 이 조에서 “중과 제외업종”이라 한다)과 중과대상업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등록세는 직전사업연도(중과제외업종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법인의 총매출액에서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한다.	⑧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 법인에 대한 등록세는 직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에서 제101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종(이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과 그 외의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아래 산식에 따라 가목 및 나목과 같이 산출한 후 그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그 다음해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른다. 1.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2.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3.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계산 산식〉

가.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100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액 × 365일)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운영일수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액 × 365일)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운영일수

나.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 100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적용례]

- 대도시내 중과세 제외업종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등기 및 전입 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 법인에 대한 등록세는 직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에서 제101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종(“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그 외의 업종(“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아래 산식에 따라 ① 및 ②와 같이 산출한 후 그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그 다음해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른다.

1.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2.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3.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대도시내 법인등기나 대도시내로의 전입등기를 하는 경우 중과세 제외업종과 중과세 대상업종간의 매출액이 없을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대도시내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설립등기 당시 중과세제외업종과 중과세 대상업종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안분할 것인가? 또한 중과세 제외업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과세대상 업종을 추가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추징을 위하여 안분기준이나 방법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법인등기 및 전입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 법인에 대한 등록세는 안분기준이나 방법에 대하여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등록세 중과세 대상을 추정하게 되는 것이다.

첫째, 적용순서는 직전 사업연도 총매출액 →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 → 그 다음해 사업연도의 총매출액 순으로 하고 그 다음해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로 적용하며

둘째,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그 외의 업종(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한 다음,

셋째,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계산후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다.

①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비율(%)

$$= [\text{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text{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 + \text{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times 100$$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액 × 365일)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운영일수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액 × 365일)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운영일수

②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비율(%) = 100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비율(%)

[예시] 법인의 1년간 총매출액이 10억이고, 대도시 중과제외업종은 365일 운영하였고, 대도시 중과업종은 150일간 운영하여 그 중과업종 실제 매출액이 2억 원인 법인이 그 중과업종을 1년간 운영할 경우 그 중과업종의 산정 매출액?

(1) 150일 : 2억 = 365일 : x (해당법인 중과업종 산정 매출액)

$$(2) x (\text{해당법인중과업종 산정매출액}) = \frac{\text{해당법인 중과업종 매출액}(2\text{억}) \times 365\text{일}}{\text{해당법인 중과업종 운영일수}(150\text{일})}$$

→ x (해당법인 중과업종 산정 매출액) = 4.87억

[예시] 위 법인의 대도시 중과업종이 차지하는 매출비율은?

$$(1) \text{중과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 : \frac{\text{해당법인 중과제외 업종 매출액}(8\text{억}) \times 365\text{일}}{\text{해당법인 중과제외 업종 운영일수}(365\text{일})} = 8\text{억원}$$

(2) 해당법인 대도시 중과업종 매출비율(%)

$$\frac{\text{해당법인 중과업종 산정 매출액}(4.87\text{억원})}{\text{해당법인 중과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8\text{억원}) + \text{해당법인 중과업종 산정 매출액}(4.87\text{억원})} \times 100 = 37.84\%$$

[예시] 만약 위 법인이 중과제외 업종을 164일만 운영하고 나머지 150일은 중과업종만을 운영하였을 경우 대도시 중과업종이 차지하는 매출비율은?

$$(1) \text{중과제외 업종산정매출액} : \frac{\text{해당법인 중과제외 업종 매출액}(8\text{억}) \times 365\text{일}}{\text{해당법인 중과제외 업종 운영일수}(164\text{일})} = 17.8\text{억원}$$

(2) 해당법인 대도시 중과업종 매출비율(%)

$$\frac{\text{해당법인 중과업종 산정 매출액}(4.87\text{억원})}{\text{해당법인 중과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17.8\text{억원}) + \text{해당법인 중과업종 산정 매출액}(4.87\text{억원})} \times 100 = 21.49\%$$

○ 예를 들면 ‘10.7.5 이전 법인등기시 중과배제 법인으로 등기 후’ 10.7.6 이후 2년내 법인 중과 대상으로 목적사업 변경한 경우 중과세 추정대상에 해당하며 안분적용 비율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text{대도시 중과업종 매출비율(\%) 산정공식} : \frac{\text{해당법인 중과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text{해당법인 중과제외 업종 매출액**} + \text{해당법인 중과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 \times 100$$

$$\text{* 해당법인 중과업종 산정 매출액} : \frac{\text{해당법인 중과업종 매출액}}{\text{해당법인 중과업종 운영일수}} \times 365$$

$$\text{** 해당법인 중과제외 업종 매출액**} : \text{해당법인 총 매출액} - \text{해당법인 중과업종 매출액}$$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총매출액이 10억이고, 대도시 중과업종이 365일간 운영하여 매출액이 2억이면 중과업종 매출비율 안분적용을 하면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 (2\text{억} / (8\text{억} + 2\text{억})) \times 100 = 20\%$$

또한 총매출액이 10억이고, 대도시 중과업종을 150일간 운영하여 매출액이 2억이면 중과업종 매출비율 안분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 산출된다.

$$- ((2\text{억} \times 365 / 150) / (8\text{억} + (2\text{억} \times 365 / 150))) \times 100 = 37.82\%$$

□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세 추정신고납부 (영 제104조2 제2항)

종 전	개 정
3. 제101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날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당해 업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 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다른 업종에 겸용하는 경우에는 겸용을 개시한 날	3. 법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법인등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 또는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한 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될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적용례]

- 대도시내 중과제외업종과 사원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추정 대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등기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등기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부동산 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 부동산 등기일 이후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 부동산 등기일 이후 2년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 지방세법시행령 제104조의2 제3호의 규정에서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법인등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 또는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중과세 대상업종을 추가하거나 겸용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될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통합시의 면허세 적용세율 적용 특례(법 제164조)

종 전	개 정
〈신설〉	④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해당되는 자치단체가 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기산일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1월 1일로 한다)에서 해당 통합 이전의 세율로 적용할 수 있다.

[적용례]

- 면허세의 경우 인구수나 자치단체별로 세율이 차등적용되기 때문에 통합할 경우 “기타시”에

서 “50만 이상시”로 변경되는 등 면허세 부담(예: 1종 면허의 경우: 30,000원(통합 전) → 45,000원(통합 후) ↑ 15,000원 인상)이 증가되어 통합 자치단체 주민이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례규정 마련한 것이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면허세 과세자료의 통보(법 제168조2)

종 전	개 정
〈신설〉	제168조의2(면허에 관한 통보) ①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면허부여기관이 제1항의 면허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적용례]

○ 종전에 지방세법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을 지방세법으로 규정한 것임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면허세 통보 처리(영 제129조)

종 전	개 정
제129조(면허에 관한 통보) ①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면허부여기관이 제1항의 면허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126조의2제9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면허부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9조(면허에 관한 통보) 시장·군수는 제126조의2제9호에 해당되어 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면허부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적용례]

- 종전에 지방세법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을 지방세법으로 규정한 것임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면허세 과세자료의 열람(법 제168조3)

종 전	개 정
〈신설〉	제168조의3(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세무공무원이 면허세의 부과 · 징수에 관하여 면허의 부여 · 변경 ·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관계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것을 청구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적용례]

- 종전에 지방세법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을 지방세법으로 규정한 것임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소득분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의 범위 확대(법 제176조8 제1항 제3호)

종 전	개 정
3. “소득세분” 이란 「소득세법」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u>확정 신고자</u> 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3. “소득세분” 이란 「소득세법」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u>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u> 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적용례]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자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익일부터 2개월말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경우도 신고납부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매도 등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분부터 적용한다.

□ 통합시 재산세의 세율 및 과세구분 적용기준 (법 제189조)

종 전	개 정
〈신설〉	⑤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된 경우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통합 이전 시·군 관할구역별로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적용례]

- 토지분 재산세는 관내 합산과세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군을 통합할 경우 “통합 전 시군에 걸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관내 합산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 경우 합산 배제기간은 5년 범위내에서 통합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전자담배의 과세대상 추가 (법 제224조 제228조 제229조, 영 제172조)

종 전	개 정
제224조 1. 吸煙用の 담배 가. ~ 라. (생 략) 〈신 설〉	제224조 1. 吸煙用の 담배 가. ~ 라. (생 략) 마. 제5종 전자담배
第228條(課稅標準) 담배消費稅의 課稅標準은 담배의 개비數 또는 重量으로 한다.	第228條(課稅標準) 담배消費稅의 課稅標準은 담배의 개비 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第229條(稅率)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연용의 담배 가. ~ 라. (생 략) 〈신 설〉	第229條(稅率)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연용의 담배 가. ~ 라. (생 략) 마.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 당 400원

[적용례]

-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로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중 전자담배가 새로이 과세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전자담배의 수입판매업자 등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며 전자담배 과세대상인 “니코틴 용액”은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농축액 + 기타 첨가물을 포함한 용액의 총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니코틴이 전혀 없는 용액의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영 제173조의2)

종 전	개 정
제173조의2(조정 세율) 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조정한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가. ~ 라. (생 략) 〈신 설〉	제173조의2(조정 세율) 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조정한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가. ~ 라. (생 략) 마.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

[적용례]

- 전자담배의 세율 적용은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으로 담배 1갑당의 니코틴용액대비 비율을 근거로 산정된 것이다.

□ 도시계획세 세율 인하 조정(법 제237조)

종 전	개 정
第237條(稅率) ①都市計畫稅의 標準稅率은 第236條의 規定에 의한 價額의 <u>1,000분의 1.5</u> 로 한다.	第237條(稅率) ①都市計畫稅의 標準稅率은 第236條의 規定에 의한 價額의 <u>1,000분의 1.4</u> 로 한다.

[적용례]

- 종전에 조례로서 운영하던 세율 체계를 지방세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는 재산세 세부담 완화관련 세율을 조정하였으나 도시계획세 세율도 조정하여 인하한 것이다.
- (적용시기 및 적용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공동시설세의 세율 인하 조정(법 제240조)

종 전		개 정	
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5	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4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5
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7	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9	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8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1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0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3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2

[적용례]

- 종전에 조례로서 운영하던 세율 체계를 지방세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는 재산세 세부담 완화관련 세율을 조정하였으나 공동시설세 세율도 조정하여 인하한 것이다.
- (적용시기 및 적용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통합시 균등분 주민세분 지방교육세 세율의 적용(법 제260조3)

종 전	개 정
〈신설〉	④ 제1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통합 이전의 세율로 적용할 수 있다.

[적용례]

- 기존의 시군이 통합되어 인구 50만이상 시로 승격되는 경우 균등할주민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

세율이 10%→25%로 상향 적용받게 되어 세부담이 증가되므로 통합시 조례로 정하는 기간(5년 이내)에는 종전과 같이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귀농인에 대한 자경 농지 등 감면(법 제261조, 영 제219조)

종 전	개 정
〈신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조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조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시·군·구,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이하 이 조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적용례]

-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 취득세 등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 귀농인의 범위는 농촌지역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농업 등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농촌지역(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¹⁾)으로 전입신고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귀농인의 범위는 다음의 요건(1+2+3)을 동시 충족하여야 감면대상 적용을 받는 귀농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경우 “귀농일”이란 귀농인이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으로 전입신고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농어촌(「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
2.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3. 농어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 감면요건

- ①(주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일 것
- ②(대상)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 ③(감면범위)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④(추징요건)
 1.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시·군·구,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이하 이 조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시·군·구의 읍·면지역(동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의 지역 등)

-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3년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를 대상으로 감면 대상으로 하나 농지의 범위는 전, 답,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의미한다.
- 추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겸업 가능 업종의 범위는 귀농인이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농업과 식품산업(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만 감면 인정하고 농업 또는 농업과 식품산업의 겸업 외에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추정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 귀농인에 대한 감면 기간인 귀농일로부터 3년 이후에는 당해 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하여는 자경농민은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시한(3년) 경과 후 자경농민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해당될 것이므로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 하여야 한다.
-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는 농어민과 관련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2호 및 같은 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귀농인이 2010.7.10일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고 거주하면서 2013. 7.10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 또는 임야를 취득 한 경우 귀농일로부터 3년이내에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 50% 감면대상이나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면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농업 외 식품산업을 겸업하는 경우로 기 감면세액의 추정대상에 해당된다.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다자녀 차량에 대한 감면 적용(법 제273조3)

종 전	개 정
	제273조의3(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 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제112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40만원을 초과하면 40만원을 경감하고, 제132조의2에 따라 계산한 등록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10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 ②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적용례]

○ 감면요건

- ①(주체) 다자녀 양육자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제외)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②(대상)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름)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③(감면범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나목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취득세가 40만원을 초과하면 40만원을 경감, 등록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100만원까지 경감하되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④(추징요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 다자녀 양육자의 범위를 보면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여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를 의미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제외하여 자녀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자녀의 기준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자녀 수(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녀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거주 할 경우에도 세제지원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가 이미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기 때문에 다자녀 양육자의 공동지분이 있더라도 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또한 만 18세미만의 연령계산을 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이 법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민법상 연령계산은 초일을 산입하기 때문에 취득일을 기준으로 연령이 만 18세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세 자녀중 첫째 자녀(자녀가 많은 경우 나이순으로 아래 3 자녀중 첫째자녀를 의미)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만 18세가 도래하기 이전까지 감면 가능하기 때문에 첫째 자녀가 취득일에 만 18세에 해당하는 경우 만18세가 되기 이전에 차량을 취득하고 등록한 경우에 감면이 되는 것이다.

다자녀 양육자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종전 차량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도 대체 취득에 포함한다.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후 감면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감면하기 때문에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구 분	감면 범위
승차정원 7~10명 이하의 승용자동차	전액 면제
승차정원 7인미만 승용자동차	배기량에 관계없이 140만원까지 경감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전액 면제
최대적재량 1톤이하화물차 및 이륜차	전액 면제

○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추정기한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와 등록세를 추징하게 된다. 이 경우 부가 고지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시행령 개정에 따라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예시〉 차량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일반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의 감면범위

감면세액 상한제 운영에 따라 배기량에 관계없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세액은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승용차를 2,500만원에 구입한 경우 2천만원에 해당하는 140만원(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감면하고 초과분인 5백만원에 해당하는 35만원(취득세 10만원, 등록세 25만원)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7~10인승 승용 및 15인 이하 승합차를 2,500만원에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가격에 관계없이 전액 면제받게 된다.

종전 시·도 감면조례에 따라 차량 1대를 감면받은 자가 추가로 지방세법령의 개정후에 1대를 취득하는 경우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따라 이미 감면받은 경우로서 지방세법 부칙 제7조에 의거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감면은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기존 감면받은 차량에 대체하기 위해 30일 이내 신차 취득 후 30일 이내 기존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세 감면대상인 장애인인 다자녀 가구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1대를 취득하여 감면신청하는 경우 장애인과 다자녀 감면규정 중 감면액이 높은 것으로 적용받게된다.

기존 감면조례에 의하여 감면받은 차량을 이전하고 새로이 차를 구입한 경우 감면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의무 보유기간에 따라 추징 되어야 하고 신규(이전 포함)로 취득한 차량은 감면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 지방세법의 추징기간은 1년이며, 다만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에 따라 이전한 경우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자치단체 조례로 감면 받은 후 의무보유 기간(시·도마다 1~3년의 기간을 달리 규정)내에 양도하고 새로이 차를 구입한 경우 기존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고 신차에 대해 감면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치단체 조례로 감면 받은 후 의무보유 기간이후에 양도하고 새로이 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기존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없이 신차에 대해 감면이 가능하다.

다자녀 양육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자치단체 감면조례에서는 타인과 공동으로 취득시 다자녀 양육자의 지분만큼 감면되나, 개정 지방세법에서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

하는 경우 감면이 되지 아니한다.

- (적용시기 및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제27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면 신청하고 감면받은 것으로 본다.
- 감면시한 : 2012.12.31까지 차량을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한하여 감면 한다.

□ 친환경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적용(법 제286조)

종 전	개 정
〈신설〉	⑥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절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적용례]

○ 감면요건

1. (취득형태) 신축(증축 또는 개축 포함)하는 주거용 건축물
2. (감면대상)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3. (감면시한) 2012년 12월 31일까지
4. (감면범위)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이내 경감

- 취득형태별로 감면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범위는 신축(증축 또는 개축 포함)하는 경우에만 해당됨으로 재축이나 대수선의 경우뿐만 아니라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주거용 건축물의 범위는 20세대 이상의 친환경 공동주택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단독주택의 경우 비록 20호 이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그리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주택(“친환경 주택”) 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에너지 절감율등”)이 2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정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게 된다.

- 평가기준 :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국토해양부 고시 '09.10)
- 평가기관 :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지정한 전문기관
(토지주택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
- 감면절차 : 건설사업자는 인증기관의 친환경 주택건설이행 확인서를 건축물 준공 전에 주택법 제29조에 의한 사용검사권 자에게 제출하고, 취득신고시 감면자료로 제출

○ 감면요건

- 에너지절감율 또는 CO₂ 저감율 25~30%미만 : 취·등록세 5%감면
- 에너지절감율 또는 CO₂ 저감율 30~35%미만 : 취·등록세 10%감면
- 에너지절감율 또는 CO₂ 저감율 35%초과 : 취·등록세 15%감면

구 분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CO ₂ 저감율		
	25~30% 미만	30~35% 미만	35% 초과
감면율	5% 감면	10% 감면	15% 감면

친환경주택과 친환경건축물과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친환경주택은 2009. 10월 시행된 제도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하며, 에너지절감율이 반드시 15%이상으로 설계되어야 하는 의무 제도인 반면, 친환경건축물은 자발적 신청에 의해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외에도 주상복합, 학교, 숙박 및 판매시설이 대상이므로 적용 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 경우 친환경주택과 친환경건축물 감면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라면 예를 들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이 친환경 주택과 친환경 건축물이 모두 감면대상에 충족되면 이중 높은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친환경 평가기준을 각각 달리 운영하고 있어 추가적인 건축비 부담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중복적용 받을 가능성이 적은 편이다.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등에 대한 기준 확인방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해당 전문기관에서 “친환경 주택건설이행 확인서”를 받은 후 자치단체장에게 감면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경우 에너지절감등 평가기관과 평가기준은 국토부의 주택법령에 따라 고시된 「친환경 주택건설기준 및 성능」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취득세 등 감면분에 대한 친환경건축물과 신설되는 친환경주택은 모두 취 · 등록세 면제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다.

※ 친환경건축물 감면기준(법§ 286④ 및 령§ 229의2)

에너지기준 \ 친환경기준	최우수 등급 (85 이상)	우수 등급 (65~85 미만)
에너지성능점수 90이상 또는 에너지효율 1등급	취 · 등록세 15%	취 · 등록세 10%
에너지성능점수 80~90미만 또는 에너지효율 2등급	취 · 등록세 10%	취 · 등록세 5%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 통합시 의료법인에 대한 감면(법 제287조)

종 전	개 정
② 「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 「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청소재지의 시와 통합되는 시·군의 경우에는 종전 도청소재지 시 지역에 한정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적용례]

- 통합시가 도청소재지로 편입됨에 따라 의료법인의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세부담이 증가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이다.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